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산지방검찰청

인권보호관/전문공보관 이영규

전화 051-606-4164

보도자료
2022. 11. 25.(금)

제 목

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사건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,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,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(제12조 제1항 제2호, 제2항 제1호 리목)

-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(부장검사 임길섭)는 오늘(11. 25.)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하여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 - 하윤수 교육감에 대하여는 학력 표시 관련 허위사실공표, 기부행위 혐의도 함께 기소하였음
- 검찰은 관련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, 금융거래추적 등 총실한 직접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법리에 따라 처분하였고,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

1

사건 개요

- 피고인 : 하윤수(부산교육감) 외 5명(포럼 □□□□ 공동대표 등 임원진)
- 공소사실 요지
 - (피고인들 공모) '21. 6. 16.경부터 '22. 1.말경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'포럼 □□□□(이하 '포럼')'을 설립·운영하면서, 포럼 조직을 이용하여 하윤수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, 지지도 제고 목적 사회관계망 서비스(SNS) 홍보,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으로 유사기관 설치 및 활동

- (하윤수 교육감) ①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'남해종합고등학교', '부산 산업대학교'임에도, '22. 5.경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'남해제일고', '경성대'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공표 ② '22. 2. 17. A협의회 대표에게 피고인의 저서 5권(시가 8만원 상당) 기부행위

2 수사 경과

- '22. 7. 13. 수사 착수(유사기관 설치 등 관련 고발장 접수)
- '22. 9. ~10. 금융거래영장 집행, 통신영장 집행, 관련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, 다수 피의자·참고인 소환조사 등
- '22. 10. 26. 기부행위 사건 송치(부산진경찰서)
- '22. 11. 25. 불구속 구공판

3 수사의 의의 및 향후계획

□ 공명선거 풍토를 훼손하는 선거부정행위 엄단

- 이 사건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여 조직적·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임
 -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간 과열경쟁과 선거비용 과다지출을 유발하여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,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에도 역행하므로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
- 검찰은 압수수색, 금융거래·통신내역 분석 등 철저한 직접수사를 통해 포럼의 설립 경위·목적·활동내용 등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여 법리에 따라 처분하였음
 - ※ 개정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위와 같은 유사기관 설치,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범죄에 대하여, 내년부터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

□ 유권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행위도 엄정 대처

- 우리 선거문화에서 '출신 학교'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 정보이므로,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졸업한 학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'졸업 당시 학교 명칭'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이 사건에서는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아닌 현재의 학교 명칭을 기재하였는바, 유사한 사례에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수 판례들을 검토하여 기소한 것임

□ 향후 계획

-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 등 만전을 기할 것임 ☒